





**2026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 Contents

## 목차

|                       |    |
|-----------------------|----|
| 재단 소개                 | 08 |
| 2026년 예술인 복지사업 한눈에 보기 | 10 |
| 예술활동증명                | 12 |
| 예술인 신문고               | 16 |
|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           | 20 |
|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 21 |
|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 22 |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24 |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28 |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32 |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35 |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 38 |
| 예술활동준비금지원             | 42 |
| 예술로(路)                | 44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50 |
|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 54 |
|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 55 |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56 |
| 예술인패스                 | 57 |
| *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및 운영지침 | 60 |





## 재단 소개

### AA/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Artists + Welfare = AW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벌마크는 행복한 예술인의 웃는 표정을 의미합니다.  
예술인(Artists)과 복지(Welfare)의 머리글자 AW를 형상화했습니다.

####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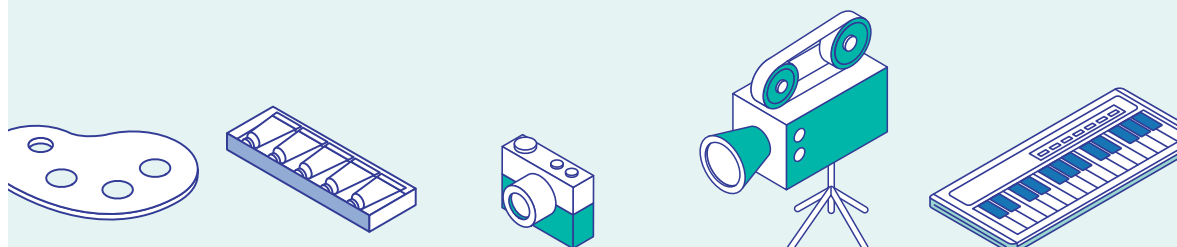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 미션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으로 예술발전에 이바지  
(「예술인 복지법」 제1조)

#### 비전

예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함께 성장하는 복지 전문기관



####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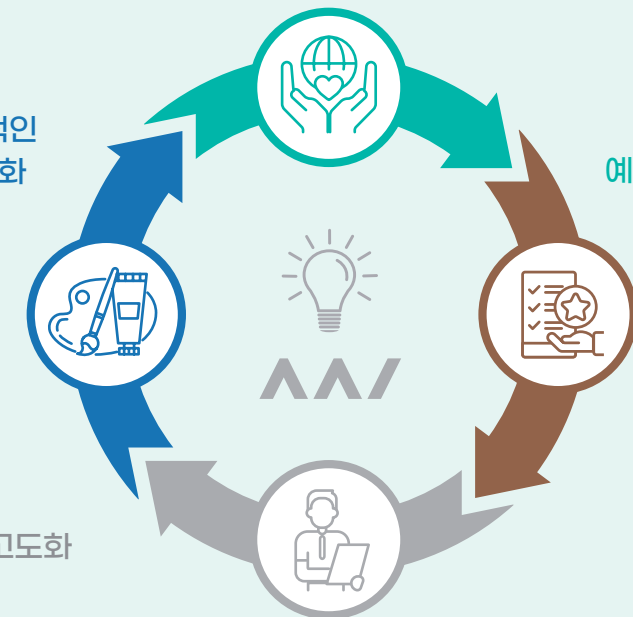
#### 전략목표

예술인의 안정적인  
삶·활동 지원 강화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

예술현장 밀착  
복지전달 체계 고도화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강화





# 2026 예술인 복지사업 한눈에 보기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
|-----------------------|-------------------------------------------------------------------------------------------------------------------|-----------------------------------------------------------------------------------------------------------------------------------------------------------------------------------------------------|------------|
| 예술인<br>신문고            | • 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br>•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 지원<br>-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기타 관련기관 연계 등 |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제38조에 따른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 조합<br>•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예술인<br>※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피해자 본인, 제3자(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모두 가능                                 | 상시         |
| 예술인조합<br>결성 신고        | •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 지원                                                                                                  | • 예술활동 관련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 상시         |
| 서면계약 위반<br>신고·상담      | • 서면계약 위반 신고, 계약 상담                                                                                               |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 상시         |
| 전자계약<br>서비스 지원        | •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 •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서면계약 체결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예술단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 상시         |
| 예술인<br>권리보호<br>교육     | • 계약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권리보호 교육 지원<br>- [개인] 동영상 교육<br>- [개인] 주제별 특화 특강<br>- [단체] 찾아가는 교육                             | •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br>•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의 관련 부서 (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예술 관련 기관·협·단체·사업체 등                                                                         | 상시         |
| 예술인<br>심리상담<br>지원     | •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사, 1:1 상담 (12회 한도)<br>•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비용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br>•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br>-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마지막 상담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br>- 참여제한: 재단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br>• 집단 심리상담은 재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 | 2월<br>24일  |
| 예술인<br>국민연금<br>보험료 지원 | •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2개월 50% 지원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br>•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예술인<br>•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br>•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2월<br>(예정) |
| 예술인<br>산재보험<br>지원     | •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br>• 납부 보험료의 50% 환급<br>• 산재 보상 관련 상담                                                               | • 보험 가입: 예술활동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br>• 보험료 지원: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진예술인 포함)                                                                                        | 상시         |
| 예술인 고용보험<br>안내창구      | • 온·오프라인 제도 안내 및 상담                                                                                               |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사업장                                                                                                                                                                           | 상시         |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
|-----------------------|---------------------------------------------------------------------------------------------------------------------------------------------------------------------------------------------------------|-------------------------------------------------------------------------------------------------------------------------------------------------------------------------------------------------------------------------------------------|------------|
| 예술활동<br>준비금지원         | • 1인당 300만 원 지원(격년제)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br>•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br>※ 참여제한<br>-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수혜자<br>- 2026년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br>- 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등                                                                              | 추후<br>안내   |
| 예술로(路)                | <b>[협업사업·기획사업]</b><br>• 예술인 활동비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지원<br>- 리더예술인: 840~960만원(6개월)<br>- 참여예술인: 600~840만원(5~6개월)<br><br><b>[지역사업]</b><br>• 예술인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br>- 예산: 기관별 141~353백만원 내외<br>- 규모: 기관별 20~50명 | <b>[예술인]</b><br>•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br>※ 참여제한<br>- 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br>-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br><br><b>[지역문화재단]</b><br>• 시·도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문화재단<br>※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 제외 | 2~3월       |
| 예술인<br>생활안정자금(융자)     | • 생활안정자금(최대 700만 원)<br>• 전세자금(최대 1억 원)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                                                                                                                                                                                                   | 매월<br>연 5회 |
| 청년예술인<br>예술활동<br>적립계좌 | •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br>•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br>•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br>※ 참여제한<br>- 2025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자<br>- 2026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자는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불가                                             | 2월 4일      |
| 예술인<br>주거공간 지원        | • 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등                                                                                                                                                                                                    | 상시         |
| 예술인<br>자녀돌봄<br>지원     | •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센터 2개소 운영                                                                                                                                                                                 | • 대상: 예술인* 자녀(24개월~10세)<br>*일반 및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br>• 운영: 화요일~일요일(요일 운영시간 상이, 사전확인 필요)<br>• 요금: 무료<br>• 위치: 대학로 소재(반디돌봄센터) 망원동 소재(예술인자녀돌봄센터)                                                                                             | 상시         |
| 예술인패스                 | • 공연, 전시, 생활 속 할인 혜택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자, 만료자 모두, *신진예술인 포함)<br>• 한 번이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았던 사람 (현재 만료되었다도 재발급 가능)<br>•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br>•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 상시         |

※ 연중 상시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됩니다.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및 지침: 60p 참고)

## < 2026년 신청 시 예술활동 실적 산정 기간 >

| 구분          | 최근 5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
| 실적 산정 기준 기간 | 2018년~신청일 | 2024년~신청일 | 2025년~신청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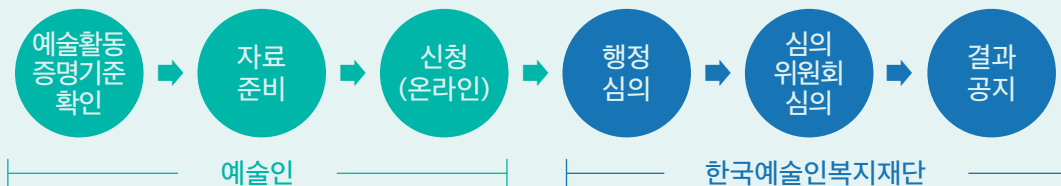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13조 ④항에 따라, 실적 산정 기준 기간 내에 재난 기간이 포함될 경우 실적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여 적용합니다.

## 신청자격

- 15개 예술분야(문학·일반미술·디자인·공예·전통미술·사진·건축·일반음악·대중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방송·공연·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예술활동 자료 제출을 통해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 진행절차

### • 예술활동증명 진행 절차



※ 신청인이 선택한 예술분야의 심의위원이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하오니, 예술분야를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 실적 자료의 확인 정보가 미비할 경우, 1회에 한해 보완이 가능하며 보완 여부에 따라 심의 소요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심의위원회 운영

- 문학·일반미술·디자인·공예·전통미술·사진·건축·일반음악·대중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방송·공연·만화 총 15개 분야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의 진행
- 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완료 후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개별 결과 통보



## 증명 방법 및 제출자료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분야 및 기준별 자료를 제출합니다.

### ▶ 예술활동증명(일반)

####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출간·공연·전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 실적이 있는 예술인
- \* 공중송신은 저작물 유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발표(웹소설, 웹툰, 음원사이트, OTT 등),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연·전시 등을 의미
-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또는 저작물의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예명 사용시 예명 확인자료),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공연·전시 포스터, 리플릿, 프로그램북, 도록, 도서, 앨범, 계약서 등)
- ※ 예술 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확인(별첨 참조)

#### ②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 해당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또는 저작물의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예명 사용시 예명 확인자료),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계좌주명), 입금정보(입금일자·입금액·입금자) 자료 제출

#### ③ 기준 외 활동

-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오랜 기간의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언론보도 내용, 공적, 기타 문화예술관련 공인된 활동 등)
- 경력단절예술인: 질병, 육아,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단절 전·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특수한 작업 방식에 대한 증빙자료 및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 ※ 예술활동이 ①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②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 활동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



### ④-1 무형유산 관련 특례(보유자·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청 및 (광역시·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 국가유산청 및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확인서류

### ④-2 무형유산 관련 특례(이수자)

- 국가유산청 및 (광역시·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유산 이수자
- 국가유산청 및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이수자 확인서류,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예명 사용시 예명 확인자료),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포스터, 리플릿, 프로그램북, 계약서 등)

###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 ▶ 예술활동증명 특례

#### ⑥ 특례(산재보험 가입,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 특례: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사본 또는 예술활동 실적 자료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특례: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사본

###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http://www.kawfartist.kr), 회원가입 필요)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www.kawf.kr](http://www.kawf.kr)) > 예술활동증명 > 신청방법 및 자료 안내
- 결과안내: 문자 및 전자우편 개별 안내

### 문의

- 예술활동증명팀 02-3668-0200, [www.kawf.kr](http://www.kawf.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http://www.kawfartist.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재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 방문 시 사전예약(02-3668-0301) 필수

## 예술인복지사업 외에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 1.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시, 재직증명서로 활용

예술인 자녀(0세-5세)의 어린이집 입소시, 예술활동증명서가 재직증명서를 대체합니다. 부모 취업여부 확인용 서류로 인정되어 우선입소 대상, 종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행복주택 신청자격으로 활용

정부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예술인신문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입니다.

### 권리침해행위 신고·상담

#### 지원대상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제38조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비예술인 포함),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

#### 지원내용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조치에 대한 지원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 예술의 자유의 침해 행위(제7조제2항)
-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행위(제8조제2항)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제9조)
- 불공정행위(제13조제1항)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제14조제4항)
- 불이익조치(제38조)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 지원대상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가 필요한 예술인 및 예비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2호 '예술인'에 해당하는 자)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상담 및 피해지원

#####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8호)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9호)

예술인의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성희롱·성폭력 피해 회복 지원 (심리·법률 상담 및 소송, 의료비 지원 등)

| 구분         | 지원내용                                                                                     |
|------------|------------------------------------------------------------------------------------------|
| 법률 지원      | •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br>• 성폭력 피해 관련 민·형사 소송비용<br>(심급별 지원, 1인당 구조비용 최대 한도 내 지원) |
| 심리상담 지원    | •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
| 의료 지원      |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 관련 전문기관 연계 | •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안내                                                  |

※상세 지원내용 변동 가능



# 예술인신문고

권리침해행위 신고·상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 예술인 신문고 처리절차

| 구분     | 처리 기관                    | 내용                                                                                                                                                                                                   |
|--------|--------------------------|------------------------------------------------------------------------------------------------------------------------------------------------------------------------------------------------------|
| 신고접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
| 사실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 • 신고내용 확인, 사실관계 조사, 자료 요구<br>•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사실조사 실시<br>•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부과)                                           |
| 심의·의결  | 예술인권리보장·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심의/ 조치 내용 의결 및 요청<br>•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조치 내용 의결 및 요청                                                                                                                                 |
| 시정명령 등 | 문화체육관광부                  | • 예술인권리침해행위<br>-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한 의결 사항 이행<br>- 시정권고, 시정명령, 수사의뢰, 행정처분, 소송지원 등<br>• 성희롱·성폭력 피해<br>-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통한 의결 사항 이행<br>- 시정권고, 시정명령, 수사의뢰, 행정처분, 소송지원 등<br>※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

## 신고 및 상담방법

|     |                                                                                                                 |
|-----|-----------------------------------------------------------------------------------------------------------------|
| 온라인 | • 온라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 예술인 신문고<br>• 전자우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sinmungo@kawf.kr<br>성희롱·성폭력 피해 withu@kawf.kr |
| 전화  | •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전화: 02-3668-0266<br>•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
| 방문  | •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상담실(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br>* 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                                               |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 법률상담·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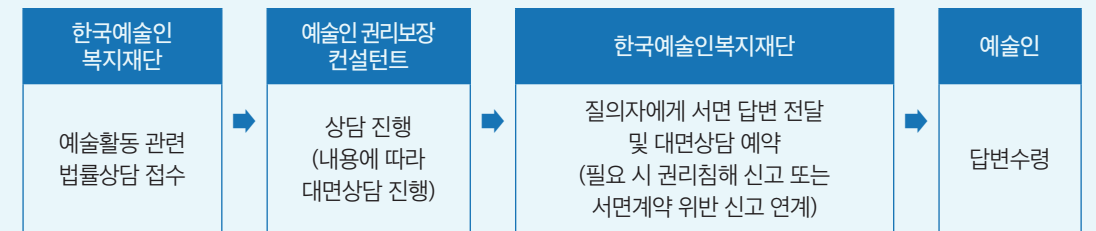
## 지원대상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 지원내용

- 예술 분야에 특화된 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변호사) 상담 제공
  -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및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지원
  - 계약서 조항 검토 및 해석,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등 문화예술 계약 관련 법률 자문
    -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기타 서류대리 작성 요청 등은 지원 불가
- 법률상담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나 서면계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의 경우 신고 창구 연계

## 진행절차



## 신청 및 상담방법

### • 신청방법

|     |                                                                              |
|-----|------------------------------------------------------------------------------|
| 온라인 | • 온라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 상담 > 법률상담<br>• 전자우편: lawadvice@kawf.kr |
| 전화  | • 상담전화: 02-3668-0200<br>•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
| 방문  |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상담실(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br>* 사전 일정 협의 및 예약 필수            |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예술활동 관련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 특정 예술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을 준비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술인권리보장법」 제14조 제1항 전단)

### 작성내용

- ① 특정 예술활동의 명칭
- ②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명칭
- ③ 예술인조합의 명칭
- ④ 주소(송달 장소)
- ⑤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 ⑥ 기한
- ⑦ 구성원의 수

### 지원절차



※ 참고 사항: 신고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 신청방법(택1)

|                                  |                                                                                                                                                 |
|----------------------------------|-------------------------------------------------------------------------------------------------------------------------------------------------|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br>(sinmungo.kawf.k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br/>상담 &gt; 조합결성안내 &gt; 예술인조합결성 바로가기</li> <li>• 처리내역 확인<br/>마이페이지 &gt; 상담 내역 &gt; 조합결성내역</li> </ul> |
| 전자우편<br>(artistunion@kawf.k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누리집 &gt;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 &gt; 결성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 &gt; 전자우편으로 제출</li> </ul>                                 |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문화예술 분야에서 서면계약을 사용하는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예술단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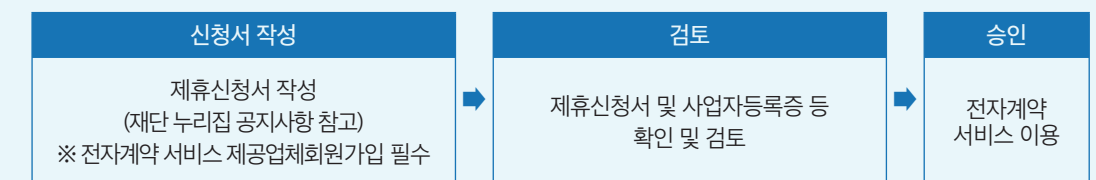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해 계약서를 쉽게 발송하고, 서명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이용 지원  
(전자우편, 카카오톡을 통한 서명 요청 및 체결 알림 등)

### 사용기간

-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사용
- ※ 상세내용 공지 참조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예술계의 관행을 개선하여 예술인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서면계약 위반 행위(「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5조의2)로 인해 피해를 입어 신고·상담 등이 필요하거나, 예술활동 계약 체결 시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

### 지원내용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상담
- 서면계약서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법률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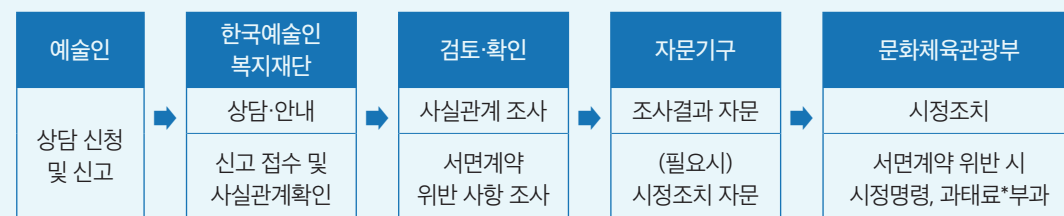
### 서면계약 위반 유형

1. 서면계약서 미작성 :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서면계약서 내용미비 : 계약서 명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3. 서면계약서 미교부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서면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서면계약서 미보존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 \*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

- ① 계약 금액
- ②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④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⑤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⑥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서면계약 위반 신고 진행절차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 행위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 신고 및 상담방법

- 신청방법

|            |                                                                                                                                                                                            |
|------------|--------------------------------------------------------------------------------------------------------------------------------------------------------------------------------------------|
| 서면계약 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gt; 상담 &gt; 법률상담</li> <li>• 전자우편: sinmungo@kawf.kr</li> <li>• 전화: 02-3668-0200(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li> </ul>     |
| 서면계약 위반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gt; 신고 &gt; 서면계약위반신고</li> <li>• 전자우편: sinmungo@kawf.kr</li> <li>• 전화: 02-3668-0200(방문 상담 시 사전예약 필수)</li> </ul> |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계의 계약 문화 확산과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공정한 예술활동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의 관련 부서(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 예술 관련 기관·협·단체·사업체 등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1) 찾아가는 교육(단체 수강)

- 교육과정: 예술 계약,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 강 사: 예술분야별 법률전문가, 현장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 소요시간: 1회, 90-180분
- 지원내용: 강사 파견 및 강사료 지원, 교육 운영(대면, 실시간 비대면), 수수료 발급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2026년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접속 > 권리보호 교육 '찾아가는 교육' 신청

### 2) 주제 특화 교육(특강, 개인 수강)

- 교육과정
  - [예술 계약] 예술 계약의 기본 개념, 분야별 계약 경향 및 유형,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등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실태현황 및 사례, 예방방안, 피해자 구제방안 등
- 교육일정: 연중 개최 예정
  - ※ 상세일정, 신청방법 등은 개최 시기에 맞추어 재단 누리집 별도 공지

### 3) 동영상 교육(개인 수강)

- \* 교육 수강 플랫폼 내 모든 강좌에 수어·문자통역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접속 > 권리보호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강좌신청



| 강좌명                     | 주요대상              | 내용                                                                                                                                                                        | 강의시간          |
|-------------------------|-------------------|---------------------------------------------------------------------------------------------------------------------------------------------------------------------------|---------------|
| 예술 계약의 이해(상)            | 예술인, 예술사업자 등      | 1. 계약의 성립<br>2. 계약의 효력<br>3.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 60분<br>(4차시)  |
| 예술 계약의 이해(하)            | 예술인, 예술사업자 등      | 1. 계약서 작성법(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50분<br>(1차시)  |
|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예술사업자, 예술인 등      | 1. 서면계약의 정의와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br>2.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br>3. 서면계약 위반 신고 처리절차<br>4.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안내                                                                              | 70분<br>(4차시)  |
|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활용의 이해       | [출연·창작]           | 1.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요<br>2. 기술지원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주요조항<br>3. 기술지원 용역계약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br>4.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br>5.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용역계약서의 활용 | 200분<br>(5차시) |
|                         | [기술지원 근로·용역]      | 1.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요<br>2. 기술지원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주요조항<br>3. 기술지원 용역계약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br>4.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br>5.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용역계약서의 활용 | 200분<br>(5차시) |
| 예술인권리 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예술인]             |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br>2.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br>3. 직업적 권리의 보장<br>4.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br>5.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와 구제 절차                                                                        | 90분<br>(5차시)  |
|                         | [예술사업자]           |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br>2. 예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 30분<br>(2차시)  |
|                         |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br>2. 예술지원기관의 권리와 의무사항                                                                                                                                   | 30분<br>(2차시)  |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종사자] |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br>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사항                                                                                                                              | 30분<br>(2차시)  |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                                                        |                                                                                                                                                                                                                                                                  |                |
|-----------------------------------------|--------------------------------------------------------|------------------------------------------------------------------------------------------------------------------------------------------------------------------------------------------------------------------------------------------------------------------|----------------|
| 문화예술분야<br>성희롱·<br>성폭력<br>예방교육           | 예술인,<br>예술사업자,<br>문화예술 유관기관<br>종사자, 예술교육기관<br>종사자 등    | 1.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br>2. 문화예술계 성 차별적 구조와 성희롱·성폭력의 특성<br>3.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판례<br>4. 문화예술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br>5. 문화예술계 성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약속                                                                                                                     | 110분<br>(5차시)  |
| *2026년 신규<br>사례로 배우는<br>예술 계약<br>실전 대응법 | 예술인,<br>예술사업자,<br>문화예술 유관기관<br>종사자,<br>예술교육기관<br>종사자 등 | 1. 계약의 체결과 계약서<br>2. 계약 체결의 유의사항<br>3. 계약 내용의 구체성<br>4. 계약의 구속력<br>5. 계약 기간과 자동연장조항<br>6. 계약 체결의 결렬과 손해배상<br>7. 계약대금의 청구<br>8. 계약 해제와 그 사유<br>9. 계약의 해지 사유<br>10. 계약 해지와 청산<br>11. 저작인격권과 공동저작물<br>12. 2차적 저작물 작성 계약<br>13. 저작인접권<br>14. 출판권 문제<br>15. 작품의 보관 책임 | 100분<br>(15차시) |
| *2026년 신규<br>공연예술분야<br>성인지 교육           | [공연예술분야<br>사업자]                                        | 1. 사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점검<br>2. 사업자의 성인지 감수성 중요성과 필요성, FAQ<br>3. 사례를 통한 성폭력, 성역할 고정관념과 인식개선<br>4. 예술인권리보장법,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교육 중요성,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 60분<br>(4차시)   |
|                                         | [국악,<br>음악(클래식),<br>무용 분야<br>예술인]                      | 1. 사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점검<br>2. 국악, 음악(클래식), 무용 분야 특수성과 성인지 감수성<br>3. 사례를 통한 성폭력, 성역할 고정관념과 인식개선<br>4.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피해 예방 및 대응                                                                                                                                         | 60분<br>(4차시)   |
|                                         | [연극, 뮤지컬 분야<br>예술인]                                    | 1. 사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점검<br>2. 연극, 뮤지컬 분야 특수성과 성인지 감수성<br>3. 사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 상황과 대응<br>4.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 60분<br>(4차시)   |

※ 강좌 세부 내용은 추후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http://www.kawf.kr)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현황

- 12개 분야 79종 보급

| 분야            | 표준계약서                                                                                                                                                                                                                                                                             |
|---------------|-----------------------------------------------------------------------------------------------------------------------------------------------------------------------------------------------------------------------------------------------------------------------------------|
| 미술<br>(12종)   |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전속계약서(작가),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전시계약서, 전시기획계약서, 대관 계약서,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공동창작계약서                                                                                                                          |
| 공예(5종)        |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 판매계약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대관계약서                                                                                                                                                                                                                             |
| 공연예술<br>(5종)  |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공연예술 대관계약서                                                                                                                                                                                                            |
| 만화<br>(8종)    | 출판계약서,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
| 애니메이션<br>(4종) |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 대중문화<br>(9종)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표준계약서(3종-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분야)/대중문화 예술인 방송·영상 표준계약서(드라마분야)/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표준계약서(비드라마분야)), 대중 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2종-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대중문화예술 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
| 방송<br>(6종)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 영화<br>(8종)    |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4종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표준 각본 계약서/표준 각색 계약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2종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영화상영기본계약서·개별상영계약서)/하나의 계약을 작성하는 방식 (영화상영계약서)), 영화 투자 표준계약서(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서)                                                           |
| 웹소설(3종)       |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
| 출판<br>(10종)   |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오디오북 배타적발행 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 게임<br>(5종)    | 게임(도급) 표준계약서, 게임(하도급) 표준계약서, 게임(중개) 표준계약서, 게임(위탁매매) 표준계약서, 게임(퍼블리싱) 표준계약서                                                                                                                                                                                                         |
| 저작재산권<br>(4종)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http://www.kawf.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이 겪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방하고, 마음건강 돌봄을 통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개인 심리상담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
  - 예술활동 과정 중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 ※ 기존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마지막 상담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집단 심리상담
  - 사후관리 집단상담: 개인 심리상담 종료 후 집단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 집단상담 프로그램: 예술활동을 계획·진행 중인 협·단체
  - ※ 집단 심리상담 신청 시 재단 사전문의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및 예술로 사업 참여 제한 예술인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1:1 심리상담(대면 및 비대면) 최대 12회
  - 성격 및 정서 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심리검사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에서 진행
  - \*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화상) 등 구체적 상담방식은 상담사와 협의하여 결정
  - \* 상담비용은 지정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며, 교통비 등 개인부담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집단 심리상담
  -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 「지원 프로그램」 내용 참조

| 구분        | 프로그램                                         |                                                                                  |                            |
|-----------|----------------------------------------------|----------------------------------------------------------------------------------|----------------------------|
| 심리검사      |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 성격 및 정서 검사                                                                     |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 개인 심리상담   | • 예술활동 및 직업 문제<br>• 대인관계, 부부·가족 문제<br>• 경제문제 |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br>• 생애 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 문제 등)<br>•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
| 집단 심리상담   | • 스트레스 대처 훈련<br>•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 우울·불안·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br>•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br>•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                            |
| 예방 및 위기개입 | • 위기개입 상담<br>(자살 위험, 성폭력 문제 등)               | • 사후관리 집단상담<br>(스트레스 관리 등)                                                       | • 심리건강 프로그램,<br>마음챙김 워크숍 등 |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지원기간: 신청접수일~2026년 12월까지
- 신청기간: 2026년 2월 24일~10월 31일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                                                                                                                                                                                                                                                                                                                                                                          |
|---------|--------------------------------------------------------------------------------------------------------------------------------------------------------------------------------------------------------------------------------------------------------------------------------------------------------------------------------------------------------------------------|
| 개인 심리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a href="http://www.kawfartist.kr">www.kawfartist.kr</a>) &gt; 알림·상담 &gt; 예술인 심리상담 &gt; 심리상담 신청</li> <li>• 동의 절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심리상담 참여 동의 필수</li> <li>• 신청 내역 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li> <li>• 상담 진행: 접수 마감 후 심리상담 기관 연계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li> <li>※ 신청접수(1차) 및 상담 준수사항 응답(2차)이 모두 완료되어야 개인 심리상담 진행 가능</li> </ul> |
| 집단 심리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우편: <a href="mailto:counseling@kawf.kr">counseling@kawf.kr</a> 를 통한 신청서 접수</li> <li>• 전화: 02-3668-0200</li> </ul>                                                                                                                                                                                                             |

## 제출서류

- 심리상담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예술인 심리상담 참여동의서, 심리상담 사전질문지

## 문의

관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http://www.kawf.kr)



##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 권역 | 기관명             | 전문가 | 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 | 광화문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 | 박윤아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211호      | 02-720-7127    |
|    | 심리상담센터 보듬과아름    | 고은정 |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5 슬로우스퀘어 318호                 | 02-2642-3375   |
|    | 그랑조 행복찾기 심리상담센터 | 조현섭 | 서울 종로구 동숭길 64, 401호                        | 010-6335-0391  |
|    | 다움심리상담센터        | 이은경 |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대정프라자 603호                  | 02-2672-1377   |
|    | 담은심리상담센터        | 김수진 |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A동 603호            | 0507-1347-2766 |
|    | 더마음공간 심리상담      | 김신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4층 418호                   | 010-9946-1379  |
|    | 도상금 임상심리센터      | 도상금 | 서울 서초구 서운로11 서초대우디오빌 819호                  | 02-578-2283    |
|    |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 조성민 | 서울 중구 퇴계로32길 22 1층                         | 02-821-5953    |
|    | 새봄심리상담연구소       | 신영주 | 서울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골든타워 1023호                | 010-8450-0272  |
|    | 심리상담센터 마음안아주기   | 이혜정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SK허브 101동 827호          | 010-2765-2512  |
|    | 심리상담센터 함께       | 이임순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1 역삼동 SK허브 오피스텔 808호          | 02-6014-1143   |
|    | 심리상담소 턴         | 김수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1 역삼동 SK허브 오피스텔 1110호         | 02-512-2680    |
|    | 심리상담연구소 함께      | 윤 영 |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408호             | 02-2104-6833   |
|    | MK내마음클리닉        | 김무경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7층 8호                 | 010-4321-4894  |
|    | 연세선아동청소년심리센터    | 박선희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35길 10 북아현동 이편한세상신촌 402옴동 211호  | 0570-1388-6676 |
|    | 연세센트럴심리센터       | 김주희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7(용산센트럴파크) C몰 2층 94호         | 050-6123-0509  |
|    | 이화심리상담센터        | 전현민 | 서울 도봉구 노해로65길 17 창동 중앙빌딩 4층 402호           | 02-999-5232    |
|    | 일과사랑 임상심리상담연구소  | 이명선 |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길 27 우성리빙텔 509호               | 02-6259-5975   |
|    | 일랑심리상담센터        | 차성이 | 서울 마포구 백범로 202 마포KCC웰츠타워 상가동 426호          | 010-2830-3272  |
|    | 임선영심리상담센터       | 임선영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3102호               | 02-6671-9090   |
| 인천 | 한들심리상담센터        | 이철희 | 서울 금천구 범안로17길 23 독산동 우정오피스텔 6층 601호        | 010-7508-3837  |
|    | 나무술심리상담센터       | 정현욱 |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8 우성메디피아 709호           | 032-576-0030   |
| 경기 | 심클심리상담연구소       | 박 일 |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163 토성프라자 6층 601호              | 0507-1482-0916 |
|    | 경인심리건강센터        | 이봉건 |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52 네이버시티빌딩 201-1호         | 032-321-2841   |
|    | 나온심리상담연구소       | 이소연 | 경기 안양시 안양판교로 20 신한데뷰 오피스텔 1304호            | 010-8908-3571  |
|    | 로템심리학습상담센터      | 오현경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 스위트 514호 | 031-904-4569   |

| 권역 | 기관명           | 전문가 | 주소                                          | 전화번호           |
|----|---------------|-----|---------------------------------------------|----------------|
| 경기 | 바른ABA심리상담센터   | 오은주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45번길 11 8층 801호             | 0507-1412-4339 |
|    | 세움심리상담센터      | 강은영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882번길 65-30 2층                | 031-202-3812   |
|    | 심리상담센터 폭신폭신킨  | 조혜현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디엠시티스카이뷰 사무동 17층 1709호 | 010-2140-1709  |
|    | 심리상담소 여지      | 예미숙 |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515번길 61 송림메디컬프라자 8층 810호       | 010-8312-3714  |
|    | 심리클리닉 아이진     | 김진아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풍림아이원플러스 T동 909호         | 010-4667-2327  |
|    | 민현정심리상담연구소    | 민현정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총창로 232 본오동 대우마이홈 8층 804호        | 010-6238-4189  |
|    | 이든샘가족아동청소년상담소 | 손혜련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평촌아크로타워 A동 1211호        | 031-478-9958   |
|    | 해인심리상담센터      | 정연승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92 101동 1512호                   | 0507-1375-4536 |
|    | 심리상담센터 아깁     | 신정원 |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춘천지식산업센터 615호                | 033-263-1155   |
|    | 이음과닿음심리상담센터   | 홍민아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22 3층                          | 010-8673-0189  |
| 강원 | 춘천임상심리연구소     | 김은희 | 강원 춘천시 춘천로 34-1 4층                          | 033-255-1533   |
|    | 그로잉마인드심리상담센터  | 최윤경 | 세종시 대평로 87 대평동 태양빌딩 5층 504호                 | 010-9600-9520  |
| 충청 | 박상규심리상담연구소    | 박상규 | 세종시 한누리대로 223 리베라 아이누리 2층 204호              | 044-868-1002   |
|    | 손애리심리연구소      | 손애리 | 대전 서구 둔산로 133 둔산동 현대아이텔 4동 418호             | 010-4174-0060  |
|    | 자유ON심리상담센터    | 송승훈 |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둔산더리치빌 302호                   | 042-485-4279   |
|    | 휴심리상담소        | 고숙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48 아주빌딩 502호              | 010-6462-4650  |
| 경상 | 마음그루심리상담센터    | 최이순 |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008 예일빌딩 504호                 | 010-5560-2632  |
|    | 마음꽃심리상담연구소    | 이수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2길 41 기전시티텔 804호            | 010-2581-0901  |
|    | 라운혜움힐링센터      | 백용매 | 경북 경산시 용성면 곡신길 11-5, 라운혜움힐링타운 내             | 053-853-7579   |
|    | 톡톡심리상담센터      | 조성해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57 축산농협 2층                     | 055-753-3033   |
| 전라 | 사단법인 심리건강연구소  | 김석웅 | 광주 동구 남문로 734 103동 206호                     | 062-512-0039   |
|    | 최영미마음상담센터     | 최영미 | 광주 북구 동문대로 111 이상빌딩 4층                      | 062-263-7942   |
| 제주 | 내마음의평권 심리상담센터 | 김현정 | 제주시 연화중길 12-9, 301호                         | 070-4213-8080  |

※ 심리상담 지정기관은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과 유지를 돕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과 보급을 확대해 공정한 계약 체결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2026년, 달라진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까지 확대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① 국내 거주 예술인
- ②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
- ③ 국민연금 가입: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지역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④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지원범위 내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미납 내역이 없는 예술인
    -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우리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승인 받은 예술인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표준계약 체결: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 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표준계약 교육 이수: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교육)
    -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표준계약(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고 관련 서면계약서 자료를 첨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한함)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유형에 한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은 해당 예술활동증명 이력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범위

- 2025년 7월 ~ 2026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3/4분기 ~ 당해년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 지원내용

• 지원금 상한액(예술인 1인, 1개월 지원 기준)

- 월 37,950원

※ 상한액은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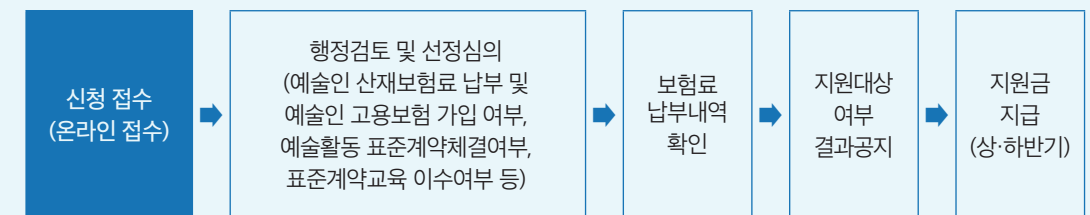
| 지원대상            |            | 지원내용    |                              |
|-----------------|------------|---------|------------------------------|
|                 |            | 지원 기간   | 지원금액                         |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            | 최대 12개월 | 납부보험료의 50%<br>*월 상한액 37,950원 |
| •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   | 일반(장기)계약** |         |                              |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단기계약       | 최대 6개월  |                              |
| •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 최대 3개월  |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보험료 조화시점 기준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미납 내역이 없는 예술인

\*\* 단기계약(예술활동에 대한 계약 체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일반, 장기계약(예술활동에 대한 계약 체결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지원절차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서류                             | ①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소득유형 전체) 또는 사실증명원<br>② 예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br>•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공통서류만 제출<br>- 예술인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br>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단에서 직접 조회                                    |
| 표준계약 체결 신청자                      | 공통서류 +<br>① 표준계약서(서면계약)<br>② 계약이행 확인자료<br>- 계약서 명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 언론기사 등 계약 체결을<br>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공통서류 +<br>교육이수 수료증                                                                                         |

### 신청방법

- 접수기간: 사업공고일 ~ 2026년 8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예술인 산재·고용보험 가입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접수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www.kawf.kr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을 위해 납부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자격

- 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
- 보험료 지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진예술인 포함)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특례'와 산재보험 가입 동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가입 및 정보변경, 해지 등 보험 사무대행 일체(산재 보상청구 제외)
- 보험료 지원: 등급별 납부 보험료의 50% 지원
- 산재 보상 관련 상담: 산재 보상 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지원
- 월 보험료 및 재단 지원금(실제 보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등급/월 보험료 선택 가능)

| 등급<br>(2026) | 기준보수액<br>(1개월) | 월 보험료(원)                 |                        | 본인 부담금(원)                |                        |
|--------------|----------------|--------------------------|------------------------|--------------------------|------------------------|
|              |                | 창작/실연/기술지원<br>(6.6/1000) | 일부 기획직군*<br>(8.6/1000) | 창작/실연/기술지원<br>(6.6/1000) | 일부 기획직군*<br>(8.6/1000) |
| 1등급          | 2,511,200원     | 16,570원                  | 21,590원                | 8,290원                   | 10,800원                |
| 2등급          | 3,024,800원     | 19,960원                  | 26,010원                | 9,980원                   | 13,010원                |
| 3등급          | 3,538,390원     | 23,350원                  | 30,430원                | 11,680원                  | 15,220원                |
| 4등급          | 4,051,990원     | 26,740원                  | 34,840원                | 13,370원                  | 17,420원                |
| 5등급          | 4,565,590원     | 30,130원                  | 39,260원                | 15,070원                  | 19,630원                |
| 6등급          | 5,079,180원     | 33,520원                  | 43,680원                | 16,760원                  | 21,840원                |
| 7등급          | 5,592,780원     | 36,910원                  | 48,090원                | 18,460원                  | 24,050원                |
| 8등급          | 6,106,380원     | 40,300원                  | 52,510원                | 20,150원                  | 26,260원                |
| 9등급          | 6,619,970원     | 43,690원                  | 56,930원                | 21,850원                  | 28,470원                |
| 10등급         | 7,133,570원     | 47,080원                  | 61,340원                | 23,540원                  | 30,670원                |
| 11등급         | 7,647,170원     | 50,470원                  | 65,760원                | 25,240원                  | 32,880원                |
| 12등급         | 8,160,761원     | 53,860원                  | 70,180원                | 26,930원                  | 35,09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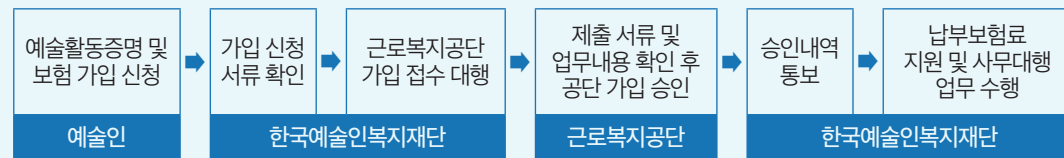
※ 대부분의 예술 직군(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은 6.6/1000 요율 적용. 일부 기획 직군(공연대리인, 큐레이터 등)은 8.6/1000 요율을 적용받으며, 적용 사업종류는 업무내용을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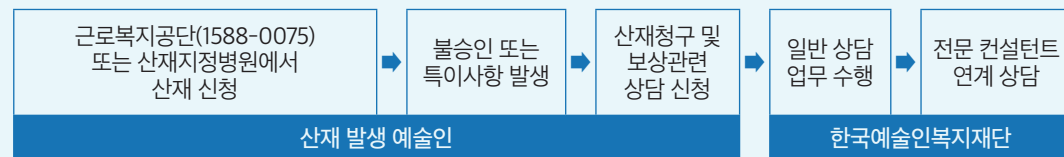
## 지원절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보험 가입 신청(재단을 사무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가입)  
- 온라인 가입 신청(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wci.kawf.kr)



-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도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보험료 지원 가능
-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고 예술활동 계약서 또는 실적자료 1건을 첨부하면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음. 단 산재보험료 지원만 가능

- 산재 보상관련 상담 신청  
- 온라인 게시판 이용한 신청(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산재청구-산재청구상담)



- ※ 산재 청구는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신청
- ※ 필요 시 전문 컨설턴트(공인노무사) 연계 상담 지원

## 유의사항

- 보험 가입을 신청한 해에는 해지 불가
-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등급)는 매년 12월 말~1월 말에만 변경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 불가
- 산재보험 제도 운영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무대행 및 납부 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wci.kawf.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통장사본(납부보험료 환급용)

## 문의

- 사회보험팀 02-3668-0200, wci.kawf.kr
- 근로복지공단(산재보상) 1588-0075
- 건강보험공단(보험료납부) 1577-1000



## [별첨 1] 산재보험 주요 혜택

|            |                                                 |
|------------|-------------------------------------------------|
| 요양급여       |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부상, 질병 등) 발생 시 치료비 지급 |
| 휴업급여       |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동안 치료 및 생활보호를 위해 생활보조금 지급           |
|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
| 간병급여       |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도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              |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산재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

## [별첨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     |                                                                                               |
|-----|-----------------------------------------------------------------------------------------------|
| 승인  | - 업무수행 행위 및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의 필요적 부수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준비, 휴식,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     |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관련 사고                                                         |
|     | -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     | - 천재지변·화재 등 활동장소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     |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     | - 직업활동 중 반복적인 신체부담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
|     | - 과로나 극도의 불안, 긴장으로 인한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
|     |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
| 불승인 | - 보험 가입 시점 전에 발생한 재해                                                                          |
|     | - 예술활동과 관계 없는 사적 행위                                                                           |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를 준용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예술활동 시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은 예술현장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 지원내용

- 온라인 안내창구(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www.kawf.kr](http://www.kawf.kr) >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소개 및 가입 절차 안내
  - 1:1 전자우편 상담
  -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 운영
  - 안내 영상 및 책자(e-book) 제공
  -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 접수
- 대면(유선) 안내창구
  - 전화 상담: 02-3668-0200(안내창구 연결)
- 신고대행 전문협력기관 운영
  - 전국 11개 전문협력기관 운영('26.1.2. 기준)
  -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관련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사업장 지원
    - ※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업무 수행
    - ※ 협력기관은 변동될 수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특징

- 당연가입 제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의무가입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기간(노무제공기간)과 계약금액(보수)으로 가입
    - ※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
- 이중취득 가능
  - ‘근로자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 이중취득 가능

## 가입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 가입제외: 예술인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수행을 위해 타인을 고용한 경우
  - 가입의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보험가입 관련 신고, 보험료 납부 의무
  - 소득기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월평균소득(계약금/계약일수x30)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



- ※ (단기계약)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
- ※ (소득합산신고)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2개 이상의 계약 체결 시 소득합산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가입 신청 가능

## 보험료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금액 × 0.75(현행 필요경비율 25% 공제) × 1.6%(보험료율)
  -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씩 균등분담
    - ※ 보험료율, 필요경비율은 제도 관련 고시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 적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예술인은 적용하지 않음)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http://www.kawf.kr))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페이지 > “보험료 계산기”에서 납입 금액 모의 계산 가능

## 보험급여

- 구직급여(실업급여)
  - 내용: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회 지원
  - 수급요건: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가입
    - ※ 고용 형태가 다수인 경우(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함
  - 지급액: 기초일액의 60% 수준 지급하며 상한액 월 68,100원, 하한액 월 16,000원
    - ※ 고용24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에서 구직급여 모의 계산 가능
  - 지급기간: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지급
- 출산전후급여
  - 내용: 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예술활동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휴식 보장 및 재취업 기회 지원
  - 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가입
  - 지급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수준 지급하며 상한액 월 22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
  - 지급기간: 90일(미숙아의 경우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 업무담당 기관

| 기관                                                                                                                                         | 대상                                                                                            | 주요업무                                                                                                                         |
|--------------------------------------------------------------------------------------------------------------------------------------------|-----------------------------------------------------------------------------------------------|------------------------------------------------------------------------------------------------------------------------------|
| <br>근로복지공단                                                | <b>예술인</b><br>• 피보험자격확인 신청 및<br>예술인 소득합산 신청<br><b>사업주</b><br>• 사업주 보험가입, 정정,<br>상실 및 보험료 산정 등 | 고용보험 가입 지원, 피보험자격 관리,<br>보험료 지원 신청<br>누리집 <a href="http://www.comwel.or.kr">www.comwel.or.kr</a><br>대표번호 1588-0075           |
| <br>h-well<br>국민건강보험<br>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b>사업주</b><br>보험료 고지서, 보험료 납부 문의                                                              |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br>누리집 <a href="http://www.nhis.or.kr">www.nhis.or.kr</a><br>대표번호 1577-1000                                |
| <br>고용24                                                 | <b>예술인</b><br>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신청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운영<br>누리집 <a href="http://www.work24.go.kr">www.work24.go.kr</a><br>대표번호 1350                                   |
| <br>한국예술인복지재단                                           | <b>사업주, 예술인</b><br>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 <b>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b><br>누리집 <a href="http://www.kawf.kr">www.kawf.kr</a> > 예술인 고용보험<br>대표번호 02-3668-0200<br>(내선 02870288) |

### 문의

예술인고용보험 안내창구 02-3668-0287~8, [www.kawf.kr](http://www.kawf.kr)



#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단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사업명               |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            |
|-------------------|------------------------------------------------------------------------------------------------------|------------|
| 지원대상<br>및<br>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br>•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br>-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월):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
|                   | 구분                                                                                                   | 1인 가구      |
|                   | 금액                                                                                                   | 3,077,086원 |
|                   | ※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br>•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배점제 미적용)                                  |            |
| 참여제한              |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수혜 예술인<br>• 2026년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br>• 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등                            |            |
| 지원규모              | 1인당 300만 원(격년제)                                                                                      |            |
| 지원인원              | 18,333명                                                                                              |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을 참고해 주세요.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 진행 절차



## 선정 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① 행정검토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② 전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③ 부문별 배점 합산을 통해 최종 선정

※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후 동점자 발생 시 공고문 및 시행지침에 명시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배점기준표

| 부문       | 항목                                                                                                                                                                                                                                           | 배점 | 산정방법          |
|----------|----------------------------------------------------------------------------------------------------------------------------------------------------------------------------------------------------------------------------------------------|----|---------------|
| 소득<br>분위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8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          |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 ~ 60% 이하                                                                                                                                                                                                                      | 7  |               |
|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90% 이하                                                                                                                                                                                                                      | 6  |               |
|          | 기준 중위소득 90% 초과 ~ 120% 이하                                                                                                                                                                                                                     | 5  |               |
| 선정<br>이력 | 0회(최초)                                                                                                                                                                                                                                       | 4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
|          | 1회                                                                                                                                                                                                                                           | 3  |               |
|          | 2회                                                                                                                                                                                                                                           | 2  |               |
|          | 3회                                                                                                                                                                                                                                           | 1  |               |
|          | 4회 이상                                                                                                                                                                                                                                        | 0  |               |
| 가점       | 원로 예술인 <sup>1)</sup>                                                                                                                                                                                                                         | 1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
|          | 농·어촌 지역 예술인 <sup>2)</sup>                                                                                                                                                                                                                    | 1  | 주민등록초본 반영     |
| 세부<br>사항 | 1) 70세(1956년 출생자) 이상 예술인을 뜻하며,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예술인'으로 분류<br>2) 주민등록초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br>※ 본인 및 세대주 외 가구원의 개인정보는 미포함(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며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    |               |
| 유의<br>사항 | • 가점(원로, 농·어촌)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소득분위·선정이력 배점과 합산하여 최대 14점까지 부여<br>• 농·어촌 지역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    |               |

## 필수서류 및 신청방법

• 확인서류(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 동의란 체크)

• 제출서류(해당자): 사업 공고문 및 시행지침 참고

• 신청방법: 우편, 온라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을 참고해 주세요.

## 문의

예술활동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http://www.kawf.kr)



## 예술로(路)

예술인-기업-기관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예술로 사업

- 예술인 산재보험을 도입합니다. (보험료 100% 지원)  
- 안전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참여 예술인 대상으로 사업 기간 동안의 산재보험료(1등급)를 전액 지원합니다.  
[절차] 사업 선정자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 > 월별 보험료 납부 > 납부보험료 확인 후 환급
- 경력단절 예술인의 예술계 복귀를 지원합니다.  
- 출산/육아, 군복무, 질병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이 예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예술로 사업 공모 시, 우대 혜택(가점제)을 적용하고, 경력 진단/컨설팅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 사업 구조

| 구분         |              | 항목                                                                                                        | 운영 주체         |
|------------|--------------|-----------------------------------------------------------------------------------------------------------|---------------|
| 다년<br>(2년) | 기획<br>사업     | 팀 공모<br>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단위(기업·기관 및 예술인)<br>협업활동 추진<br>① 다년형 2기('25~'26년), ② 다년형 3기('26~'27년) | 한국예술인<br>복지재단 |
|            | 협업사업<br>지역사업 | 개별 공모<br>예술인 및 기업·기관 선정 후 매칭 진행. 상호 합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 추진                                                 |               |
| 단년         |              |                                                                                                           | 광역문화재단        |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1)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

| 구분             | 참여제한 조건                                                     |
|----------------|-------------------------------------------------------------|
| 협업·기획·<br>지역사업 | - 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br>-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 협업사업           | 예술로 사업 3년 이상 연속 참여자(해당기간: 2023년~2025년) *기획사업은 연속참여제한 미적용    |

#### 2)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기관
- 예술인과의 파트너십 의지 및 협업활동에 대한 수용성, 적극적 지원·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

| 구분                 | 참여제한 조건                                                                                                                                                                           |
|--------------------|-----------------------------------------------------------------------------------------------------------------------------------------------------------------------------------|
| 협업·<br>기획·<br>지역사업 |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89 코드 ex. 000-89-00000<br>※ 단,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허용                                 |
|                    |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단순교육 형태)<br>- 타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br>- 기업·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 요구하는 기업·기관<b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기업·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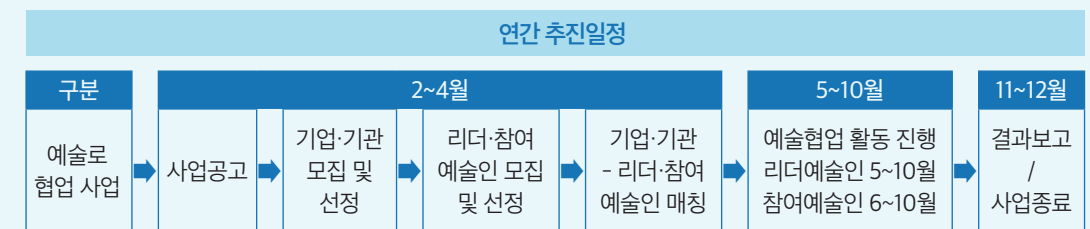


## 예술로 협업사업

### 사업내용

심의를 통해 기업·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매칭 진행. 상호 합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 추진

### 진행절차



### 지원규모 및 내용

| 구분       |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                                        |
|----------|----------------------------------------------|----------------------------------------------|
| 지원<br>규모 | • 총 840만 원<br>- 활동기간(6개월): 월 140만 원(*세액공제 전) | • 총 600만 원<br>- 활동기간(5개월): 월 120만 원(*세액공제 전) |
| 지원<br>내용 |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br>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br>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 선정심의

#### 1)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 심의절차: 1차 서류심의 및 2차 면접심의 후 기업·기관 매칭 완료자에 한해 최종 선정  
※ 2차 면접심의 선정자에 한해 기업·기관 매칭 기회 부여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종합검토를 통해 2차 면접심의 대상자 선정
  - 2차 면접심의: 1차 서류심의 선정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 2) 기업·기관

- 심의절차: 서류심의를 통해 우선매칭대상 기업·기관 선정 후 리더예술인과 매칭된 기업·기관에 한해 최종 선정
- 심의방법: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평가항목별 부합여부 배점심의를 통해 선정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 예술로(路)

## 예술로 협업사업

### 활동내용

#### 1) 리더예술인

-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매칭 기업·기관의 이슈를 매개하여 협업주제 방향을 설계하고 프로젝트 총괄 운영 및 성과관리
- 월 10일, 30시간 이상 활동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월별 활동보고서 및 협업활동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참여예술인 활동내용 및 성과 취합(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매칭데이, 컨설팅·모니터링 등 행사 참여

#### 2) 참여예술인

- 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과 협업활동 실행
- 월 10일, 30시간 이상 활동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월별 활동보고서 및 협업활동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활동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매칭데이, 컨설팅·모니터링 등 행사 참여

#### 3) 기업·기관

-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과 협업활동 운영 및 실행
- 예술인 월별 활동보고서 검토·확인 및 협업활동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예술협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활동 공간, 운영비, 재료비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매칭데이, 컨설팅·모니터링 등 행사 참여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1)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및 포트폴리오(지정양식)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용역계약서' 제출
- 신청방법: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2) 기업·기관

-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기업·기관 소개자료 각 1부
- 신청방법: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제출

###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 예술로 기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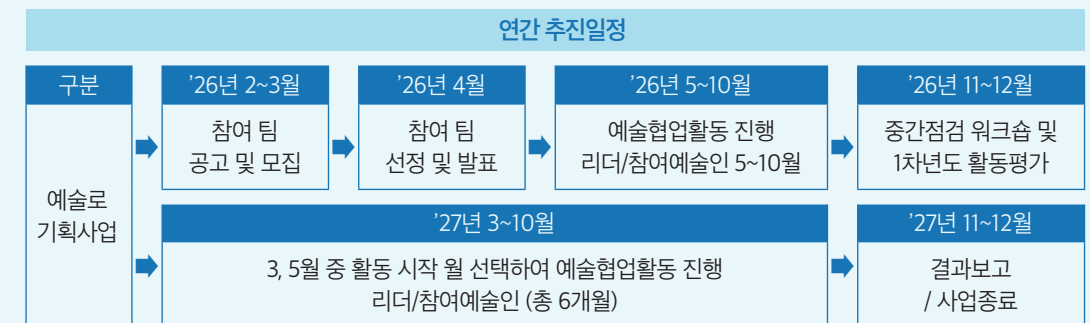
### 사업내용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단위 협업활동 추진  
> 2년(2026~2027) 지원

### 팀 구성 유의사항

- 팀별 기업·기관 1곳, 리더예술인 1인 및 참여예술인 2인 이상~6인 이하 구성
- 팀별 2가지 이상 예술분야 혼합 구성 필수(예술분야는 예술활동증명 분야 구분에 따름)
- 팀 내 각 주제(기업·기관-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는 중복될 수 없음

### 진행절차



### 지원규모 및 내용

| 구분       |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                                       |
|----------|---------------------------------------------|---------------------------------------------|
| 지원<br>금액 | • 총 960만원<br>- 활동기간(6개월): 격월 320만원(*세액공제 전) | • 총 840만원<br>- 활동기간(6개월): 격월 280만원(*세액공제 전) |
| 지원<br>내용 |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br>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활동 진행에<br>필요한 활동비·컨설팅 지원      |

### 선정심의

- 심의절차: 1차 서류심의 및 2차 PT·인터뷰심의 후 최종 선정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종합검토를 통해 2차 PT·인터뷰심의 대상 팀 선정
  - 2차 PT·인터뷰심의: 1차 서류심의 선정 팀을 대상으로 평가항목별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 예술로(路)

## 예술로 기획사업

### 활동내용

#### 1) 리더예술인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기업·기관을 매개하여 협업주제 방향을 설계하고 프로젝트 총괄 운영 및 성과관리

- 2개월 내 20일, 60시간 이상 활동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격월 팀 활동보고서 및 1차년도 중간점검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참여예술인 활동내용 및 성과 취합(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컨설팅·모니터링, 워크숍 등 행사 참여

#### 2)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과 협업활동 실행

- 2개월 내 20일, 60시간 이상 활동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격월 팀 활동보고서 및 1차년도 중간점검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활동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컨설팅·모니터링, 워크숍 등 행사 참여

#### 3) 기업·기관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과 협업활동 운영 및 실행

- 격월 팀 활동보고서 검토·확인 및 1차년도 중간점검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예술협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활동 공간, 운영비, 재료비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컨설팅·모니터링, 워크숍 등 행사 참여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팀 리더예술인이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및 협업활동계획서, PT자료 각 1부
  - ※ PT자료의 경우, 1차 서류심의 이후 2차 PT·인터뷰심의 대상 팀에 한하여 추가 제출
  -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용역계약서' 제출
- 신청방법: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 지원신청 전, 기업·기관의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필수

###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 예술로 지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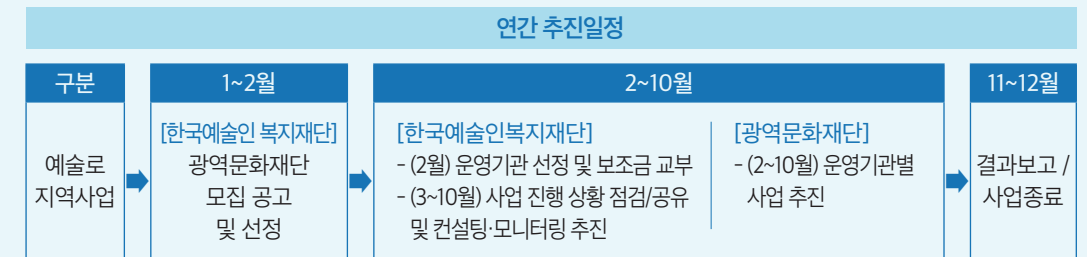
### 사업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이 심의를 통해 기업·기관 및 예술인을 선정한 후, 매칭을 진행하여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 추진

### 신청자격

시·도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문화재단(단, 서울/경기/인천문화재단은 제외)

### 진행절차



### 지원규모 및 내용

- 운영기관별 예술인 최소 20명 ~ 최대 50명 지원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 운영
  - ※ 운영규모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산재보험료 포함) 지원
-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 간담회 및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성과관리(컨설팅·모니터링) 지원
  -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 선정심의

- 심의절차: 서류심의를 통해 지역사업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 최종 선정
- 심의방법: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평가항목별 종합심의를 통해 선정
  -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제출방법: 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 ※ 광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로 지역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기업·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용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제외)

※ 용자금 지급 시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지원내용

#### • 생활안정자금

- 한도 : 최대 700만 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 금리 : 2.5% (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 기간 : 3년 또는 4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온라인 접수)

| 유형     | 용자조건                                                                                                                                                                                                                                                                                                                                                                 | 신청기한                              |
|--------|----------------------------------------------------------------------------------------------------------------------------------------------------------------------------------------------------------------------------------------------------------------------------------------------------------------------------------------------------------------------|-----------------------------------|
| 의료비    |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br>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br>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br>다.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br>※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br>※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용자금 승인 (용자 최소 금액: 50만 원)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 부모요양비  | 신청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br>※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장례비    | 배우자, 자녀, 신청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br>※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결혼자금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
| 긴급생활자금 |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에 필요한 비용                                                                                                                                                                                                                                                                                                                            | -                                 |



#### • 전세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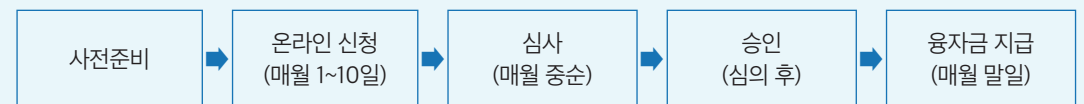
- 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 1.95% (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 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신청기간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 누리집 공고 확인

| 유형   | 용자조건                                                                                                                                                                                                                                                                                                                                 | 신청기한                        |
|------|--------------------------------------------------------------------------------------------------------------------------------------------------------------------------------------------------------------------------------------------------------------------------------------------------------------------------------------|-----------------------------|
| 전세자금 | 1. 대상 부동산: 아파트,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오피스텔, 단독주택<br>2. 매매시세 평가 기준(참고사항)<br>• 아파트: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기준 최근 시세의 100% 반영<br>• 빌라(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최근 시세의 130% 반영<br>• 오피스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기준 최근 시세의 130% 반영<br>3. 유의사항<br>• 매매시세 평가 기준은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br>•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 경우, 용자금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누리집 공고 확인 |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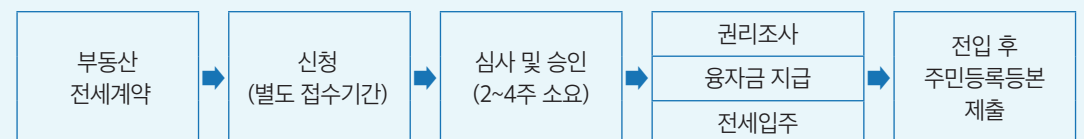
#### • 생활안정자금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



#### • 전세자금용자

- 접수 기간 내 내방 접수
- 지급절차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제출서류

#### • 생활안정자금

| 유형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 의료비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br>② 의료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br>② 주민등록등본<br>③ 소득금액증명원<br>④ 가족관계증명서<br>⑤ 금융교육이수증 |
| 부모요양비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br>② 요양시설 비용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
| 장례비    | ① 장례식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br>②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br>③ 말소자 초본 |                                                                              |
| 결혼자금   | ①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br>② 미혼자: 예식장계약서(예식장측 날인 필수) 및 청첩장       |                                                                              |
| 긴급생활자금 | ① 사실관계확인서<br>② 용자추천서                                    |                                                                              |

#### • 전세자금

| 구분                       | 제출서류                                                                                                                 |
|--------------------------|----------------------------------------------------------------------------------------------------------------------|
| 기본신청서                    | ① 전세자금 신청서(신분증 포함)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br>③ 예술활동증명서      ④ 대출금지급위임장<br>⑤ 포괄위임장      ⑥ 자동이체신청서(하나은행에 개별 제출)<br>⑦ 금융교육이수증 |
| 민원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br>② 가족관계증명서<br>③ 소득금액증명원<br>④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 재산세주택항목-배우자 포함)                      |
| 부동산 서류                   | ① 부동산등기부 등본(제출용)      ② 전유부 건축물대장(발급용)                                                                               |
| 임대차 계약 서류<br>(※ 공공임대 제외) | ①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br>③ 공제증서(중개사무실)      ④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이상)                             |
| ※ 공공임대<br>(해당자만)         | ① 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br>② 권리침해유무확인서<br>③ 계약사실확인원<br>④ 전환계약 관련 안내문(최종 전환보증금 확인 필수)<br>⑤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신청조건

| 구분     | 신청조건                                                                                                                                                                                                                                                                                                                                                                                      |
|--------|-------------------------------------------------------------------------------------------------------------------------------------------------------------------------------------------------------------------------------------------------------------------------------------------------------------------------------------------------------------------------------------------|
| 생활안정자금 | ①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br>※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영주 목적 해외 거주 국민<br>② 재단 생활안정자금 용자 미보유자 (배우자 포함, 완납 후 신청 가능)<br>③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한 자<br>④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신진예술인 및 미보유·만료자는 신청 불가)<br>⑤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자                                                                                                                                                        |
| 전세자금   | <p>• 임차인(신청자)</p> ①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한 자<br>②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br>※ 재외국민: 외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영주 목적 해외 거주 국민<br>③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신진예술인 및 미보유·만료자는 신청 불가)<br>④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br>⑤ 재단 생활안정자금 용자 미보유자(완납 후 신청 가능)<br>⑥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br>※ '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연36,925,027원 이하<br>⑦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해당 요건은 용자금 지급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br>⑧ 공동임차인 형태의 계약은 신청 불가 |
|        | <p>• 임대인</p> ①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불가)<br>② 공공임대사업자(민간 법인은 불가)<br>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닐 것                                                                                                                                                                                                                                                                                     |
|        | <p>• 임차 주택</p> ① 개별 등기된 주택으로 전세 계약만 가능<br>※ 월세 및 반전세는 불가, 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능<br>②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br>③ 전세보증금에 따른 질권 설정이 가능한 주택<br>(임대인의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질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 불가)                                                                                                                                                                                      |

### 문의

예술인금고팀 02-3668-0238~9, [www.artloan.kr](http://www.artloan.kr)



##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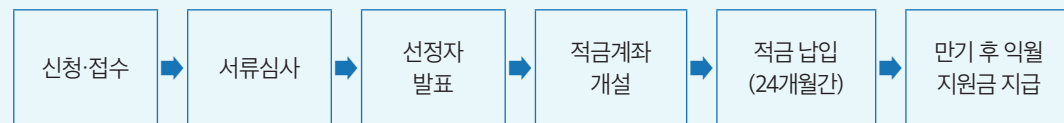
- 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신청일 기준)
  - ①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
  - ②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 '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연 36,925,027원 이하
  - ③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참여제한
  - 2025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자(중도 해지자 포함)
  - 2026년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선정자는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불가

### 지원내용

-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 지원(1인 최대 240만 원)

### 신청방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



###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주민등록초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재외국민에 한함)

### 문의

예술인금고팀 02-3668-0200, www.artloan.kr

※ 사업 세부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술인 주거공간 지원



예술인의 활동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시중 가격 5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거주자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및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이하이고,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등 세부기준 및 입주조건은 각각의 주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기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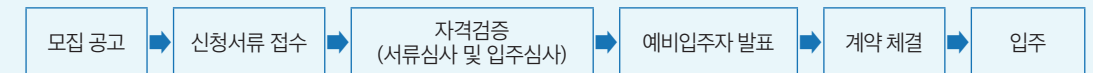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예술인 임대주택 공급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공사가 기존에 매입한 주택을 예술인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조성하여 시중 가격 50%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
-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 공간조성, 입주자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으로 입주자들의 다양한 협업 및 성장 기회 지원

| 예술인 지원주택                                                                                           | 건물규모                                                          | 임대료                                                 | 입주자 모집                                         |
|----------------------------------------------------------------------------------------------------|---------------------------------------------------------------|-----------------------------------------------------|------------------------------------------------|
| <br>서초 그루하우스  | • 총 60호<br>(도시형 생활주택 53호, 주거용 오피스텔 7호)<br>• 전용면적 19.38~26.23㎡ | • 보증금 2,400만원<br>• 월 임대료 50.7만원~ 56.9만원<br>(관리비 별도) | • 입주 완료<br>(공사 발생 시 모집)                        |
| <br>서대문구 북가좌동 | • 총 96호(도시형 생활주택)<br>• 전용면적 22.84~29.29㎡                      | • 보증금 500만원 내외<br>• 월 임대료 27.1만원~ 37.8만원(관리비 별도)    | • 입주자 모집 완료(25년 12월)<br>• 입주 예정<br>(26년 3월 이후) |

### 지원절차

- 입주절차



- 공사세대 모집 문의 및 공지안내
  - 서초구 그루하우스 운영기관: (주)아이부키-입주자 모집(www.ibooke.kr, 02-553-8387)
  - 서대문구 그루하우스 운영기관: (사)나눔과미래-공지알림(www.yesnanum.org, 070-4149-6540)
  - ※ 모집공고 사유 발생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도 안내(예정)

###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www.kawf.kr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서비스, 연령통합 돌봄을 제공하여 예술인이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용대상

- 24개월~10세 예술인\* 자녀
- \* 일반 및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 단,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센터소개

| 구분   | 반디돌봄센터                                                                                                                                                                   | 예술인자녀돌봄센터                                                                                                       |
|------|--------------------------------------------------------------------------------------------------------------------------------------------------------------------------|-----------------------------------------------------------------------------------------------------------------|
| 특징   | • 공연단체와 극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주택에 위치<br>• 유기농 식자재를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 제공                                                                                                       | • 아이들이 집처럼 뛰어놀 수 있는 주택<br>• 유기농 재료로 만든 가정식 식사와 간식 제공                                                            |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길 19, 1층 (이화동 4-1)<br>•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도보 10분거리<br>• 버스 100, 109, 143, 150, 160, 273, 301, 710, 2112 통신대 하차                                                |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4(망원동 473-30)<br>•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5번출구 도보 2분거리<br>• 버스 7011, 271, 7733, 163, 601, 606 마포구청 하차 |
| 시설규모 | 28평(방2, 주방1, 화장실1)                                                                                                                                                       | 54평(방3, 주방1, 화장실2, 학부모 공간)                                                                                      |
| 운영인력 | 센터장 1인, 돌봄교사 3인 교대근무                                                                                                                                                     | 센터장 1인, 돌봄교사 3인 교대근무                                                                                            |
| 운영시간 | ※ 월요일 휴무<br>• (화~금) 13:00~22:00<br>• (토) 11:00~22:00, (일) 11:00~20:00<br>• 필요시 주말 9:00~11:00, 공휴일 11:00~13:00, 22:00~23:00, 화요일~토요일 22:00~23:00 이용 가능 (단, 2일 전 사전 예약 필수) | ※ 월요일 휴무<br>• (화~일) 11:00~20:00<br>• 필요시 09:00~11:00, 20:00~22:00 이용 가능 (단, 2일 전 사전 예약 필수)                      |
| 프로그램 | 미술활동, 요리활동, 동화구연, 신체활동 등                                                                                                                                                 | 영유아~아동의 자기주도적, 연령통합적 놀이프로그램 운영                                                                                  |
| 전화   | 02-741-0347                                                                                                                                                              | 02-3143-1919                                                                                                    |
| 온라인  | <a href="http://cafe.daum.net/bandicare">http://cafe.daum.net/bandicare</a>                                                                                              | <a href="http://cafe.naver.com/yebomcenter">http://cafe.naver.com/yebomcenter</a>                               |

### 이용방법

- 각 돌봄센터 문의 후 회원가입
-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루 전까지 예약, 전일이 휴관일이거나 주말 및 공휴일 돌봄의 경우 2일 전까지 예약)  
※ 운영시간 내 전화 및 방문 예약을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
- 24~48개월의 유아는 전담인력 배정을 위해 1일 전 예약 필수
- 긴급한 경우, 10~13세(초등학생)인 형제자매를 동반할 경우 사전 문의 필수

### 문의

반디돌봄센터(대학로) 02-741-0347  
예술인자녀돌봄센터(마포) 02-3143-1919  
사회보험팀 02-3668-0200, [www.kawf.kr](http://www.kawf.kr)

## 예술인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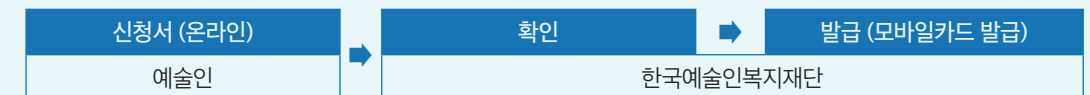


예술인이 더 많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관람료 할인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 예술인패스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번 발급으로 평생 사용하세요!
- ▶ 예술활동증명 유효 여부와 상관없이 예술인패스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번이라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적이 있다면, 현재 만료되었더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과 연계한 체크카드를 통해 상해보험 가입, 할인이 가능한 예술인패스 전용 복지물, 전용 예매 사이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자/만료자 모두, \*신진예술인 포함)
- 예술인패스 발급 이력이 있는 자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자격증 첨부
- ※ 미술관, 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모바일 카드 사용하기

- ① 예술인패스 누리집 접속 ※ PC 및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
  - ② '발급확인' 페이지 선택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동일
  - ③ '모바일 카드' 발급 정보 확인 > 성명, 생년월일
  - ④ '모바일 카드' 다운로드  
> 사진첩 저장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사용
-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아이디가 여러 개인 경우 '모바일카드 미발급' 상태로 확인될 수 있음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가입된 아이디 조회 가능



※ PC, 모바일 환경에 따라 예술인패스카드 이미지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혜택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제공
  -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 별도 발급
  - 매월 할인 혜택 정보 제공(전자우편)
- ※ 상세한 할인 및 혜택 사항은 예술인패스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예술인패스 누리집 통해 발급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문의

기획조정팀 02-3668-0200, [www.kawf.kr](http://www.kawf.kr)

예술인패스 누리집 <http://artpass.kawf.kr:9443>



##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5. 4. 8.]

### 예술활동의 증명(제3조의2 관련)

제3조의2(예술활동의 증명) 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8.>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활동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⑤ 제1항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3. 3. 21.]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3 관련)

①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다.
2.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으로 한다.
3.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5년. 다만,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으로,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예술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있던 기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장되는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과 종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예술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없는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2.]



별표 1 [신설 2023. 9. 12.]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가. 일반기준

| 문화예술 분야                        | 세부 기준                                                                                                                                                                                                                                                                                                                                                                                                                                                                         |
|--------------------------------|-------------------------------------------------------------------------------------------------------------------------------------------------------------------------------------------------------------------------------------------------------------------------------------------------------------------------------------------------------------------------------------------------------------------------------------------------------------------------------|
| 1) 문학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 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시(동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시조 또는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소설(동화 및 청소년소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단편 소설의 경우는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문학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2) 미술,<br>(응용미술을 포함)<br>사진, 건축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전시회에 전시한 실적을 합하여 5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3) 음악, 국악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반을 1장 이상 낸 실적이 있는 사람<br>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br>사)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아)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9. 12.]



| 문화예술 분야 | 세부 기준                                                                                                                                                                                                                                                                                                                                                                                                                                                                                                |
|---------|------------------------------------------------------------------------------------------------------------------------------------------------------------------------------------------------------------------------------------------------------------------------------------------------------------------------------------------------------------------------------------------------------------------------------------------------------------------------------------------------------|
| 무용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 공연에서 안무를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연극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공연의 연출을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공연을 통하여 희곡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희곡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영화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상영영화(「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상영영화의 연출을 1회 이상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상영영화를 통하여 시나리오를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연예(演藝)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을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대본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사)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관련 잡지 등에 대중문화 비평을 3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아)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대중문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9. 12.]

| 문화예술 분야 | 세부 기준                                                                                                                                                                             |
|---------|-----------------------------------------------------------------------------------------------------------------------------------------------------------------------------------|
| 만화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         | 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작품을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
|         | 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 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5회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 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을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
|         | 바)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비교: 위 표 중 둘 이상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실적 하한을 1점으로 하여 각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시: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5편 이상의 작품 발표가 기준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편을 발표했다면 0.2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이면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최초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가목의 일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화예술 분야       | 세부 기준                                                                                                                                                                                                                                                                                                                         |
|---------------|-------------------------------------------------------------------------------------------------------------------------------------------------------------------------------------------------------------------------------------------------------------------------------------------------------------------------------|
| 1) 문학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 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시, 시조 또는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단편소설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2) 미술, 사진, 건축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작품을 전시회에 1편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3) 음악, 국악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음악 또는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4) 무용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5) 연극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6) 영화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상영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문화예술 분야 | 세부 기준                                                                                                                                                                                                                                                                    |
|---------|--------------------------------------------------------------------------------------------------------------------------------------------------------------------------------------------------------------------------------------------------------------------------|
| 7) 연예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 또는 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패션쇼에 1회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마)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8) 만화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1회 이상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비평을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br>라)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2.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나.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 3.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 가. 일반기준

| 문화예술 분야       | 세부 기준                                                                                                                                                                                    |
|---------------|------------------------------------------------------------------------------------------------------------------------------------------------------------------------------------------|
| 1) 미술, 사진, 건축 |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로 참가한 경우는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2) 음악, 국악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3) 무용         |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4) 연극         |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5) 영화         |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2편 이상의 상영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6) 연예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7) 만화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으로 총 2년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다)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3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비고: 위 표 중 둘 이상의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실적 하한을 1점으로 하여 각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시: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참여가 기준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편에 참여했다면 3분의 1점으로 환산)하여 더한 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이면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 별첨

나. 최초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가목의 일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화예술 분야       | 세부 기준                                                                                                                                |
|---------------|--------------------------------------------------------------------------------------------------------------------------------------|
| 1) 미술, 사진, 건축 | 실적산정대상기간(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미술·사진 또는 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2) 음악, 국악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또는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3) 무용         |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4) 연극         |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5) 영화         |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상영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6) 연예         | 가)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br>나)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7) 만화         | 실적산정대상기간 동안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의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 정 2014.12.1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4호
- ▶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 ▶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 ▶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 ▶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
- ▶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호
- ▶ 개 정 2021.12.2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
- ▶ 개 정 2022.12. 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6호
- ▶ 개 정 2023. 6.30.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9호
- ▶ 개 정 2024. 4.30.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83호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본원칙)

-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활동임이 분명한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제2장 신청

### 제3조(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

제4조(협력 협·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 ③ 협력 협·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 제5조(협력 협·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 ① 협력 협·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제3장 심의위원회

### 제6조(심의방법)

예술활동증명의 심의방법은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행정심의는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다.
2. 심의위원회 심의는 제1호에 따라 부합된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 제9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 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복합 심의 등)

- ① 예술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 제4장 인정기준

### 제11조(예술활동의 범위)

예술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 제12조(예술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삭제)
-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 후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이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 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기준 기간의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 ③ '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 ④ '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5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5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5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여 확인서, 예술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스태프 중 시행령 [별표1]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 제17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년간 잡지 등을 말한다.
-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18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렉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 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투르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20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 ①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방송댄스), 스트리트댄스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투르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투르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 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뮤직비디오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투르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작창,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령 [별표1]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웹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 제25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활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된다.

### 제26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활동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 제27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 제28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삭제)

## 제29조(무형유산 관련 특례)

- ① 심의위원회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또는 시도무형유산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활동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3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 제5장 효력

###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활동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 제35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의 예술활동증명은 무효이다.

### 제36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행 일 2026년 2월  
발 행 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 획 기획조정팀  
주 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대표전화 02.3668.0200  
누 리 집 [www.kawf.kr](http://www.kawf.kr)  
디 자 인 (사)에스디워크 서울지사